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262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제8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제88조제2항제5호(중전의 제3호) 중 “제2호”를 “제4호”로 한다.

제9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제90조제2항제5호(중전의 제3호) 중 “제2호”를 “제4호”로 한다.

제9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102조의3부터 제10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제102조의4(청약철회) ①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이하 이 절에서 “청약자”라 한다)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102조의5(청약철회의 효과)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4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청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보험계약 청약의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제10항 중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에”를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로, “산출에”를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대로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7조 중 “위반에”를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로, “또는 적용 업무에”를 “적용 업무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로 한다.

제209조제3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102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4의 청약철회는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해당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에 관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계약자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된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제86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 제102조의3)

1) 보험설계사 등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유발·가장하게 하거나 보험사고의 시기, 내용 등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2)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으로서 보험사기행위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관련 보험회사의 준수사항(제102조의4, 102조의5)

보험회사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토록 함. 단,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시 경찰청의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보 이용 근거 마련(제176조제10항, 제177조)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경유하여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 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 흥 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유 정 복
장 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2263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